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철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23. ~ 7.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를 “(사업의 위·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으로, “수탁자”를 “위·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로, “수탁자”를 “위·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을 “사업의 위·수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율	비고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수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수탁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의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u>수탁자</u> 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u>수탁자</u> 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위·수탁시행의 협의) ① --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 위·수탁자-----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 ----- 위·수탁자-----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945